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76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서충식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9,266,552원 및 그 중 18,331,744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12. 28.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2. 접수 제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19.8%, 지연배상금율 22.8%,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1. 16.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2. 1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20. 7. 21. 기준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원금 18,331,744원, 이자 10,934,808원의 합계 29,266,552원이다.

다. 한편 피고 C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그의 배우자였던 피고 D에게 2017. 12.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2. 접수 제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C는 2018. 2. 12.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356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4.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20. 6. 9.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9,266,552원 및 그 중 원금

18,331,744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다만 당시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들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이 보유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을 피고 D이 변제하고 피고 C가 피고 D으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8. 1. 4.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2018. 2. 8. 취하간주된 사실, 이후 피고 D이 2020. 6. 29. 피고 C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424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이혼하고 피고 C가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2020. 9. 1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 C가 피고 D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들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나 피고 C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빌라 G동

[도로명 주소] 부산 사하구 H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35.48㎡

2층 135.48㎡

3층 135.48㎡

4층 135.48㎡

지하 40.5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사하구 E 대 39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1호 철근콘크리트조 61.5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9,000분의 49,875. 끝.

